

# 성균나노과학기술원 규정

## 제 1 편 총 강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성균나노과학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기술원은 나노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재, 공정, 소자 및 측정 분야들에 대한 창의적 연구와 선진교육을 주도함으로써 나노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소재지)** 기술원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안에 둔다.

**제4조(본교 제반규정과의 관계)** ①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기술원의 교원인사(임용 등) 및 교육부문 학사운영(교육과정·학생지도 포함)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“대학”은 “기술원”으로, “학과”는 “나노과학기술학과”로, “대학운영위원회”는 “기술원운영위원회”로 각각 본다.

② 기술원 소속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**제5조(사업)** 기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나노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 개발
2. 나노과학기술 전문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
3.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및 기술 교류
4. 산·학 공동연구 계획 수립 및 지원
5. 연구성과 사업화
6. 국내외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
7. 나노과학기술 분야 연구 자료의 수집정리와 로드맵 작성
8.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
9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# 제 2 장 조 직

**제6조(기구)** 기술원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기술원장
2. 위원회
  - 가. 자문위원회
  - 나. 운영위원회
  - 다. 편집위원회
3. 연구부
  - 가. 나노소재 연구부
  - 나. 나노공정 연구부
  - 다. 나노소자 연구부
  - 라. 나노측정 연구부
4.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연구센터
5.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 융합 연구센터
6. 양자정보센터
7. 나노기술사업화센터

8. 일반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

9. 지원조직

가. 행정실

나. 공동기기관리실

**제7조(기술원장)** ① 기술원장은 국내·외 저명한 학자 가운데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기술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기술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며,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

④ 기술원에는 기술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, 부원장의 임용절차·임기 등은 기술원장의 임용절차·임기 등을 준용한다.

### 제 3 장 자문위원회

**제8조(구성)** ① 기술원의 정책개발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는 기술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술원장이 된다.

③ 본교 자연과학 캠퍼스 부총장, 기술원 부원장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국내·외 저명 학·연·산 전문가 가운데서 기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9조(기능)**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술원의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

2. 기술원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기술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② 기술원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의 심의는 기술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, 기술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0조(회의)**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.

### 제 4 장 운영위원회

**제11조(구성)** ① 기술원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기술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술원장이 된다.

③ 부원장, 기술원 산하 연구부장, 편집위원장,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서 기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12조(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기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
2. 기술원의 제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3.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
4.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

5.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기술원 연구위원의 임용, 평가기준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7.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

8. 예·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
9. 산하 부서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10. 기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
11. 공동기기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13조(회의)**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 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5 장 편집위원회

**제14조(구성)** ① 기술원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  
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편집위원장은 기술원장이 임명한다.  
③ 위원은 국내·외의 전문연구자 가운데에서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기술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 
④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5조(회의)**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6 장 교원·연구원

**제16조(기술원 전임교원)** ① 기술원에는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기술원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.  
② 기술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**제17조(겸직교수)** ① 기술원에는 겸직교수를 둘 수 있다.

- ② 겸직교수란 기술원으로 겸직 발령된 본교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력으로 정의한다.
- ③ 기술원 겸직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**제18조(석좌교수 등)** ① 기술원에는 석좌교수, 연구교수, 객원교수, 교환교수 등을 둘 수 있다.  
② 기술원 석좌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**제19조(연구위원)** ① 기술원의 연구위원은 기술원 전임교원, 겸직교수, 석좌교수, 객원교수, 교환교수 등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.  
② 연구위원은 기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 
③ 기술원장은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국내·외의 전문연구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20조(연구원)** ① 기술원 및 기술원 부설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 - 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 - 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 - 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 - 라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2. 객원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3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

-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기술원 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기술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제1항제2호의 객원연구원은 기술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기술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
## 제 2 편 연구기관

### 제 1 장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연구센터

#### 제 1 절 총 칙

**제21조(명칭)**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부품소재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 이 장에서 같다)라 한다.

**제22조(목적)** 센터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 부품소재와 관련한 친환경에너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3조(운영기간)** 센터 운영기간은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기간 및 후속 관리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 2 절 조 직

**제24조(기구)**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3. 과제심의위원회
4. 장비도입심의위원회

**제25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괄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#### 제 3 절 운영위원회

**제26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지방정부,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27조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
5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
6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28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 4 절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등

**제29조(연구과제심의위원회)** ① 센터에는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선정 심의를 위해서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심의위원은 지방정부,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30조(장비도입심의위원회)** ① 센터에는 장비 도입을 위해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심의위원은 지방정부,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2 장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 융합 연구센터

#### 제 1 절 총 칙

**제31조(명칭)**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소재기반 휴먼인터페이스 융합 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하며, 이 장에서 같다)라 한다.

**제32조(목적)** 센터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과학기술분야의 전략적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세계수준의 지식 및 경쟁력을 창출하고 융합과학기술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3조(운영기간)** 센터 운영기간은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학제간융합분야 국가핵심연구센터 사업기간 및 후속 관리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 2 절 조 직

**제34조(기구)**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3. 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위원회
4. 소위원회
  - 가. 자문위원회
  - 나. 평가위원회
  - 다. 산학협력위원회
  - 라. 교육위원회
  - 마. 연구위원회
  - 바. 국제협력위원회

**제35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

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통괄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### 제 3 절 운영위원회

**제36조(설치 및 구성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37조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
5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6.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7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38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4 절 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위원회

**제39조(전문인력양성 학사관리위원회)** ① 센터에는 융합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학사운영을 위한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은 연구위원 및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3 장 양자정보센터

### 제 1 절 총 칙

**제40조(명칭)**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설 양자정보센터라 한다.

**제41조(목적)** 센터는 양자컴퓨팅 기술 관련 국내외 전문연구인력과 기초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, 양자컴퓨팅 관련 교내외 워크샵 및 국제학회를 추진함으로써 양자정보기술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절 조 직

### 제42조(기구)

1. 센터장
2. 운영위원회
3. 연구과제심의위원회

**제43조(센터장)** ① 센터장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본교 교수로서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## 제 3 절 운영위원회

### 제44조(설치 및 구성)

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5조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 기타 회계에 관한 주요사항
5. 연구소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**제46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4 절 연구과제심의위원회 등

**제47조(연구과제심의위원회)** ① 센터에는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타당성 및 선정 심의를 위해서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둔다.

- ② 심의위원은 지방정부,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③ 심의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3편 나노기술사업화센터

## 제 1 절 총 칙

**제48조(명칭)** 본 센터는 나노기술사업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49조(목적)** 센터는 기술원 및 본교의 나노기반 융복합 기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,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선도 연구자 및 기술창업자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50조(사업)** 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수요조사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주기 기술사업화 총괄
2. 기술사업화 지향 미래 핵심기술 로드맵 제시 및 마케팅
3. 시작품 등 연구개발 중간성과물 판매대행 및 연구자 창업지원
4. 글로벌 산학협력 기업과 기술교류회 운영 주관
5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 제 2 절 조 직

제51조(기구) 센터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1. 센터장
2. 부센터장
3. 운영위원회

제52조(센터장 및 부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기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센터장을 두며,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 및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 3 절 운영위원회

제53조(설치 및 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54조(심의사항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조직 및 운영체계 등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
4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해당 운영위원회 종료 후 최초 도래하는 기술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5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4 편 교 육 부 문

### 제 1 장 교 육 과 정

제56조(교육과정) 기술원은 다음 나노과학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일반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
2. 산학교육 및 특화사업

### 3. 공개강좌

- 제57조(교육과정의 운영) ① 교육과정 운영은 기술원 부원장이 통할한다.  
②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제 2 장 학사관리위원회

- 제58조(학사관리위원회) ① 일반대학원 나노과학기술학과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.  
② 학사관리위원회 위원은 기술원 전임교원과 본교 겸직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나노과학기술학과장이 된다.  
③ 학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(대학원)에 따른다.

## 제 5 편 지 원 기 구

### 제 1 장 행 정 실

- 제59조(행정실) ① 기술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.  
②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.  
1. 기술원의 행정업무 전반  
2. 기술원의 연구 및 교육부문 행정지원  
3. 기술원의 교내·외 홍보업무  
4. 기술원의 정기간행물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지원  
5. 기술원 부설연구소의 행정업무 지원  
6.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

- 제60조(행정직원) ① 행정실에는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두며, 본교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.  
② 행정직원은 기술원장을 보좌하여 기술원의 사무를 처리한다.

## 제 2 장 공동기기관리실

- 제61조(공동기기관리실) 기술원 공동기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원 안에 공동기기관리실을 둔다.

- 제62조(업무) 공동기기관리실은 제2조 및 제2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공동기기의 사용·분석 등에 의한 기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방안 수립 및 운영
  2. 기술원내 연구·실험실습용 기자재의 공동 활용 촉진
  3. 연구·실험실습용 기자재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
  4. 공동기기 관리·운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운영
  5.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
  6. 공동기기 사용료의 징수 및 기자재의 유지·보수
  7.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업무
  8. 기타 기술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업무

- 제63조(직원) 공동기기관리실에는 제반 기기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## 제 6 편 기 타 사 항

### 제 1 장 재 정

**제64조(재정)** ① 기술원의 재정은 교비, 외부기관의 연구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기술원은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65조(회계연도)** 기술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# 제 2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**제66조(사업계획)** 기술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7조(사업실적)** 기술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8조(감사)** 기술원은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 3 장 보 칙

**제69조(세부사항)** ①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원장이 정한다.

② 기술원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행정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부원장이 기술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